|  |  |  |
| --- | --- | --- |
| **전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전개**  **관련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39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세수정책전개에 관한 통지》(세재[2013]37호)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이하 ‘영개증’) 개혁 시행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현 징세관리 유관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1. 납세인 계산서 사용에 관한 문제  (1) 본 지역 영개증 시범 실시 일로부터, 증치세 납세인은 고속도로, 내하화물 운송업의 통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증치세 일반 납세인 (이하 ‘일반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이하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와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화물운송서비스 제공 이외의 기타 증치세는 과세대상으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이하 ‘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소규모 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구매자가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대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대신발행 납세신청서》（첨부파일 1）을 작성한다.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대리발급은 대리발급 전용 세금계산서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2) 항만부두 서비스, 화물여객운송터미널서비스, 하역운송서비스,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 일반납세인은 정액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3)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종사하는 일반납세인은 6절(联)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5절 증치세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그 중 4절은 외화매입송금페이지로 사용한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납세인은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그 중 4절은 외화매입송금페이지로 사용한다.  (4) 납세인이 본 지역 시범 실시일 전에 증치세로 대체한 영업세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서비스 종료, 할인, 계산서발급오류 등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014년 3월 31일 전까지 원(原)주관 세무기관에 영업세적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신청하고, 적자전용세금계산서와 화물운송전용적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해서는 안 된다.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해야 하는 경우, 2014년 3월 31일 전까지 원주관세무기관에 영업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고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서는 안 된다.  2. 세무통제시스템 사용에 관한 문제  (1) 본 지역의 영개증 시범 실시 일로부터, 일반납세인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물전용운송업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이하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을 사용한다. 화물운송 서비스 외에, 기타 증치세 과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보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증치세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이하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을 사용한다.  (2) 2013년 8월 1일부터 자동차(오래된 차량 제외) 소매업에 종사하는 일반납세인이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자동차 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3) 시범 지역의 납세인이 사용하는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 전용 설비에는 금세디스크와 세금신고디스크가 있으며, 납세인은 금세디스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IC카드 코딩을 진행한다. 화물운송전용 세무통제시스템과 자동차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전용 설비에는 세금통제디스크 및 세금신고디스크가 있으며, 납세인은 세금통제디스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IC카드 코딩을 진행한다.  화물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및 전용 설비관리는 현행 위조방지 세무시스템 유관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각성 국가세무기관은 기존의 관련 문서를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4) 베이징시 소규모 납세인은 2012년 9월 1일부터 금세디스크 또는 세금통제디스크로 보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신고디스크로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IC카드 코딩을 하던 기존 방법은 계속 적용된다.  3.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증치세 세무통제시스템) 계산서 발급 한도액 비준 문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증치세 세무통제시스템)의 계산서발급 한도액 관리를 실시한다. 계산서발급 한도액이라 함은 건당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판매액 합계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상한선을 말한다.  계산서발급 한도액은 일반 납세인이 신청하며, 구와 현(区县)의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비준한다. 일반납세인이 계산서발급 한도액 신청 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발급 한도액 신청서》(첨부파일 2)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이 납세인 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현장검사 범위와 방법은 각 성 국가세무기관에서 결정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요구를 보장하고, 납세인의 실제 생산경영 및 판매상황에 따라 비준을 진행해야 한다.  4. 화물운송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  (1) 일반납세인이 제공한 과세화물운송서비스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기타 증치세 과세 대상, 면세대상 또는 비증치세과세대상을 제공한 경우,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중, ‘계약운송업자 및 납세인 식별번호’ 란의 내용에는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 발급한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일반 납세인 정보를 기입한다. ‘실제 계산서수취측 및 납세인 식별번호’ 란에는 실제 부담한 운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일반납세인 정보를 기입한다. ‘비용 및 금액’란의 내용에는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명세항목 및 증치세 불포함 판매액을 기입한다. ‘합계금액’ 란에는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대상의 증치세 불포함 판매 합계를 기입하며, ‘세율’ 란에는 증치세 세율을 기입한다. ‘세율’란은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대상의 증치세 불포함 판매액과 세율 계산적용에 따라 계산된 증치세액을 기재한다. ‘세금포함가격(갖은자)(아라비아숫자)’란에는 증치세불포함 판매액과 증치세액의 합계를 기재한다. ‘기구번호’ 란의 내용에는 화물운송업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 세금통제디스크 번호를 기재한다.  (3) 세무기관이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 시,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을 통해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좌측 상단의 ‘대리발급’이라는 문구를 자동인쇄하고, ‘세율’란에 소규모 납세인 증치세 징수율을 기재한다. ‘세액’란에는 과세화물운송서비스 대상의 증치세 불포함 판매액과 소규모 납세인 증치세 징수율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을 기재한다. ‘비고’란에는 세수완납 증명서 번호를 기재한다. 기타 항목의 내용과 본 조 제 2항은 일치해야 한다.  (4)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서비스 종료, 할인, 계산서발급오류 및 세금계산서 공제페이지, 계산서 페이지 인증 불가 등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화물운송전용적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 계산서수취측 또는 운송업자는 《적자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첨부파일 3)를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심사 후《적자 화물운송업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첨부파일 4, 이하 ‘통지서’)를 발급한다. 실제 계산서수취측은 《통지서》에 기재된 증치세액을 당기매입세액에서 전출하고, 미공제한 증치세매입세액은 당기매입세액에 기재하고, 운송업자가 발급한 적자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 후, 《통지서》와 함께 기장 증빙한다. ‘납세인 식별번호 인증 불일치’,’세금계산서 코드번호, 번호인증 불일치’ 및 구매서비스가 증치세 공제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에서 전출할 수 없다. 운송업자는 《통지서》에 의거하여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시스템을 통해 매출마이너스 수치로 적자 화물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통지서》는 잠정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현행 적자전용세금계산서 유관 규정을 따른다.  5.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관리 문제  (1)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는 잠정적으로 비정상세금계산서(失控发票) 신속보고매커니즘 관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인증 결과유형에는 인증일치’,’인증불가’, ‘인증불일치’, ‘암호오류’,’중복인증’ 등(잠정적으로 비정상세금계산서 유형은 포함되지 않음)이 포함되며, 감사결과 유형에는 ‘일치’, ‘불일치’, ‘부수부족’, ‘번호중복’, ‘폐기’ 및 ‘보류(滞留)’등이 포함된다. 인증,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처리는 전용세금계산서의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3)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대조검사작업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비준검사 조작규정(시행) 》에 따라 유관 규정을 적용한다.  (4)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분실 처리는 전용세금계산서의 유관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운송업자의 주관세무기관은 《분실 화물운송업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기보고 증명서》(첨부파일 5)를 발급한다.  6. 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사용규정> 수정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156호) 제 5조, 《국가세무총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유관 세수 징세관리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 77호), 《국가세무총국 베이징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전환 시범 유관 세수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 42호)는 동시에 폐기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파일：  1.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대신발행 납세신청서  2.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한도액 신청서  3. 적자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  4. 적자 화물운송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  5. 분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기보고 증명서  2013년 7월 10일  국가세무총국  첨부파일：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43112.files/n12343126.zip> |  | **关于在全国开展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  **有关征收管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39号  为了贯彻落实《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全国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税收政策的通知》（财税〔2013〕37号）精神，保障营业税改征增值税（以下简称营改增）改革试点的顺利实施，现将征收管理有关问题公告如下：  一、关于纳税人发票使用问题  （一）自本地区营改增试点实施之日起，增值税纳税人不得开具公路、内河货物运输业统一发票。  增值税一般纳税人（以下简称一般纳税人）提供货物运输服务的，使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以下简称货运专票）和普通发票；提供货物运输服务之外其他增值税应税项目的，统一使用增值税专用发票（以下简称专用发票）和增值税普通发票。  小规模纳税人提供货物运输服务，服务接受方索取货运专票的，可向主管税务机关申请代开，填写《代开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缴纳税款申报单》（附件1）。代开货运专票按照代开专用发票的有关规定执行。  （二）提供港口码头服务、货运客运场站服务、装卸搬运服务、旅客运输服务的一般纳税人，可以选择使用定额普通发票。  （三）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一般纳税人，应使用六联专用发票或五联增值税普通发票，其中第四联用作购付汇联；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小规模纳税人，应使用普通发票，其中第四联用作购付汇联。  （四）纳税人于本地区试点实施之日前提供改征增值税的营业税应税服务并开具营业税发票后，如发生服务中止、折让、开票有误等情形，且不符合发票作废条件的，应于2014年3月31日前向原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营业税红字发票，不得开具红字专用发票和红字货运专票。需重新开具发票的，应于2014年3月31日前向原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营业税发票，不得开具专用发票或货运专票。  二、关于税控系统使用问题  （一）自本地区营改增试点实施之日起，一般纳税人提供货物运输服务、开具货运专票的，使用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税控系统（以下简称货运专票税控系统）；提供货物运输服务之外的其他增值税应税服务、开具专用发票和增值税普通发票的，使用增值税防伪税控系统（以下简称防伪税控系统）。   （二）自2013年8月1日起，一般纳税人从事机动车（旧机动车除外）零售业务开具机动车销售统一发票，应使用机动车销售统一发票税控系统（以下简称机动车发票税控系统）。  （三）试点纳税人使用的防伪税控系统专用设备为金税盘和报税盘，纳税人应当使用金税盘开具发票，使用报税盘领购发票、抄报税；货运专票税控系统和机动车发票税控系统专用设备为税控盘和报税盘，纳税人应当使用税控盘开具发票，使用报税盘领购发票、抄报税。  货运专票税控系统及专用设备管理，按照现行防伪税控系统有关规定执行。各省国税机关可对现有相关文书作适当调整。  （四）北京市小规模纳税人自2012年9月1日起使用金税盘或税控盘开具普通发票，使用报税盘领购发票、抄报税的办法继续执行。  三、关于增值税专用发票（增值税税控系统）最高开票限额审批问题  增值税专用发票（增值税税控系统）实行最高开票限额管理。最高开票限额，是指单份专用发票或货运专票开具的销售额合计数不得达到的上限额度。  最高开票限额由一般纳税人申请，区县税务机关依法审批。一般纳税人申请最高开票限额时，需填报《增值税专用发票最高开票限额申请单》（附件2）。主管税务机关受理纳税人申请以后，根据需要进行实地查验。实地查验的范围和方法由各省国税机关确定。  税务机关应根据纳税人实际生产经营和销售情况进行审批，保证纳税人生产经营的正常需要。    四、关于货运专票开具问题  （一）一般纳税人提供应税货物运输服务，使用货运专票；提供其他增值税应税项目、免税项目或非增值税应税项目的，不得使用货运专票。  （二）货运专票中“承运人及纳税人识别号”栏填写提供货物运输服务、开具货运专票的一般纳税人信息；“实际受票方及纳税人识别号”栏填写实际负担运输费用、抵扣进项税额的一般纳税人信息；“费用项目及金额”栏填写应税货物运输服务明细项目及不含增值税的销售额；“合计金额”栏填写应税货物运输服务项目不含增值税的销售额合计；“税率”栏填写增值税税率；“税额”栏填写按照应税货物运输服务项目不含增值税的销售额和适用税率计算得出的增值税额；“价税合计（大写）（小写）”栏填写不含增值税的销售额和增值税额的合计；“机器编号”栏填写货运专票税控系统税控盘编号。  （三）税务机关在代开货运专票时，货运专票税控系统在货运专票左上角自动打印“代开”字样；“税率”栏填写小规模纳税人增值税征收率；“税额”栏填写按照应税货物运输服务项目不含增值税的销售额和小规模纳税人增值税征收率计算得出的增值税额；“备注”栏填写税收完税凭证号码；其他栏次内容与本条第（二）项相同。  （四）提供货物运输服务，开具货运专票后，如发生应税服务中止、折让、开票有误以及发票抵扣联、发票联均无法认证等情形，且不符合发票作废条件，需要开具红字货运专票的，实际受票方或承运人可向主管税务机关填报《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申请单》（附件3），经主管税务机关核对并出具《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通知单》（附件4，以下简称《通知单》）。实际受票方应暂依《通知单》所列增值税税额从当期进项税额中转出，未抵扣增值税进项税额的可列入当期进项税额，待取得承运人开具的红字货运专票后，与留存的《通知单》一并作为记账凭证。认证结果为“无法认证”、“纳税人识别号认证不符”、“发票代码、号码认证不符”以及所购服务不属于增值税扣税项目范围的，不列入进项税额，不作进项税额转出。承运人可凭《通知单》在货运专票税控系统中以销项负数开具红字货运专票。《通知单》暂不通过系统开具，但其他事项按照现行红字专用发票有关规定执行。  五、关于货运专票管理问题  （一）货运专票暂不纳入失控发票快速反应机制管理。  （二）货运专票的认证结果类型包括“认证相符”、“无法认证”、“认证不符”、“密文有误”和“重复认证”等类型（暂无失控发票类型），稽核结果类型包括“相符”、“不符”、“缺联”、“重号”、“属于作废”和“滞留”等类型。认证、稽核异常货运专票的处理按照专用发票的有关规定执行。  （三）稽核异常的货运专票的核查工作，按照《增值税专用发票审核检查操作规程（试行）》的有关规定执行。  （四）丢失货运专票的处理，按照专用发票的有关规定执行，承运方主管税务机关出具《丢失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已报税证明单》（附件5）。  六、本公告自2013年8月1日起实施，《国家税务总局关于修订〈增值税专用发票使用规定〉的通知》（国税发〔2006〕156号）第五条、《国家税务总局关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税收征收管理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年第77号）、《国家税务总局关于北京等8省市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税收征收管理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2号）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  1.代开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缴纳税款申报单  2.增值税专用发票最高开票限额申请表  3.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申请单  4.开具红字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通知单  5.丢失货物运输业增值税专用发票已报税证明单  国家税务总局  2013年7月10日  附件：附件下载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43112.files/n12343126.zip> |